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2. 21 선고 2021가단3067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나300332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2. 21 선고 2021가단30678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변 론 종 결 2023. 10. 26.

판 결 선 고 2023.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0.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8. 10. 30. 접수 제57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D 소재 E 대구지사 구미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C은 2015. 1. 1.부터 2020. 4. 29.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대금 수금 업무를 하였다.

나. C은 2018. 10.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20. 4. 28. 원고에게 2020. 2. 29.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채권, 재고 조사 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C은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판매처 점주로부터 수금한 물품대금 중 일부만을 이 사건 대리점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합계 409,116,621원을 횡령하였고, 위와 같은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집계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친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써,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 또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는 등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겼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C에 대해 2018. 7.경까지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409,116,621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409,116,621원은 이 사건 집계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계표는 2020. 2. 29.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집계표를 근거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2018. 10. 30.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409,116,621원 상당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그 채권액이 얼마인지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구미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피고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채권액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고,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구미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의 가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증여행위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가 도래되었는지 불분명하다.

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유빈

별지